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1 호 2022. 2. 18.(금)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50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50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 권고사항인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1,2,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
- 감사원 권고사항인 금연지도원 공개모집 내용 신설(안 제2조제1항)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4.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0.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지도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inno07189@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청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지도계, 담당자 : 김숙경 주무관
- 3) 전 화 : 052-241-8302 / 팩 스 : 052-241-8109

6. 기타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자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 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울산광역시

시 복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 -----.</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신 설></p> <p>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u>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u>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p>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p>	<p>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p> <p>①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p> <p>②----- ----- ----- ----- ----- 구청장-----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5제1항제1호 ----- ----- -----.</p> <p>③ 제2항-----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 -----.</p> <p>④ ----- 제3항 -----</p>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
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
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
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

⑤ (중전의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별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금연지도원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 style="width: 20%;">성 명 (한 자)</td> <td rowspan="3"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사진 (3cm×4cm)</td> </tr> <tr>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전화번호)</td> </tr> </table> <p>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p> <hr/> <p>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첨부물</td> <td>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백상지 80g/㎡]</p>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금연지도원 신청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신청인</td> <td style="width: 20%;">성 명 (한 자)</td> <td rowspan="3"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사진 (3cm×4cm)</td> </tr> <tr> <td>생년월일</td> </tr> <tr> <td>주소(전화번호)</td> </tr> </table> <p>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p> <hr/> <p>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첨부물</td> <td>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10mm×297mm[백상지 80g/㎡]</p>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금연 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 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